|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재정부령 제66호《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은 재정부 부무회의와 국가세무총국 국무회의에서 개정 통과하여, 이에 공포하는 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11년 10월 28일**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행조례》(이하 ‘조례’)에 의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제2조** 조례에 첨부된《자원세 세목세율표》중 열거한 일부 세목의 징수범위는 아래와 같이 한정한다.(1) 원유는 천연원유를 채굴하는 것을 뜻하며, 인공으로 제조한 석유는 포함하지 않는다.(2) 천연가스란 전문적으로 채굴하거나, 원유와 동시에 채굴하는 천연가스를 뜻한다.(3) 석탄이란 원탄(原煤)을 뜻하며, 세탄(洗煤), 선탄(选煤) 및 기타 석탄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4) 기타 비금속 원광이란 상술한 제품과 광산염 이외의 비금속 원광을 뜻한다.(5) 고체소금이란 해염(海盐)의 원염(原盐), 호염(湖盐)의 원염과 광산염을 뜻한다.액체소금이란 간수를 뜻한다.**제3조** 조례 제1조에서 단위라 칭하는 것은 기업,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화단체 및 기타 단위를 가리킨다.조례 제1조에서 개인이라 칭하는 것은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가리킨다.**제4조** 자원세 과세제품의 구체적 적용세율은 본 세칙에 첨부된《자원세 세목세율명세표》에 의거하여 집행한다.광산품 등급의 분류는 본 세칙에 첨부된《몇가지 주요품종의 광산자원등급표》에 의거하여 집행한다.자원등급을 구분하는 과세제품에 대해,《몇가지 주요품종의 광산자원등급표》중 열거되지 않은 명칭의 납세인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납세인의 자원 현황에 따라《자원세 세목세율표》와《몇가지 주요품종의 광산자원등급표》에서 확정한 인근 광산 또는 자원 현황, 채굴조건이 근접한 광산의 세율표준을 참조하여 30% 변동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비안한다.**제5조** 조례 제4조에서 가리키는 판매액은 납세인이 과세제품을 판매하고, 구매측으로 부터 수취한 전체 대금과 가격외비용이다. 단, 수취한 증치세 매출항목 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가격 외비용은 가격 이외에 구매측으로부터 수취한 수속비, 보조금, 기금, 모금비, 이자, 장려비, 위약금, 대납금, 지연납부이자, 배상금, 대리수취대금, 대지급금, 포장비, 포장물 임대료, 저장비, 품질보증비, 운송하역비 및 기타 각종 가격외 수취비용을 포함한다. 단, 아래 열거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다.(1) 아래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대리지급운송비용1. 운송부문의 운수비용 영수증을 구매측에 발급한 경우2. 납세인이 해당 영수증을 구매측에 전달한 경우(2) 아래 조건에 동시에 부합하고, 대리수취한 정부성기금 또는 행정 사업성 수수료 1. 국무원 또는 재정부가 비준하여 설립한 정부성 기금,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 가격주관부문이 비준하여 설립한 행정사업성 수취비용2. 수취 시 성급 이상의 재정부문이 제작한 재정증빙을 발급한 경우3. 수취대금 전액을 재정에 상납한 경우**제6조** 납세인이 인민폐 이외의 회폐로 판매액을 결산한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 판매액의 인민폐 환산율은 판매액이 발생한 당일 또는 당월 1일의 인민폐 환율의 중간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인은 사용할 환산율 계산 방법을 사전에 결정해야 하며, 결정 후 1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제7조** 납세인이 신고한 과세제품 판매액이 현저히 낮고,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과세제품을 판매행위로 간주하여 판매액이 없을 경우,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열거한 순서에 따라 판매액을 확정한다.(1) 납세인의 최근 동종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에 따라 확정.(2) 기타 납세인의 최근 동종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에 따라 확정.(3) 과세표준에 따라 확정. 과세표준가격은:과세표준가격= 원가×(1+원가이윤율) ÷ (1-세율)공식적인 원가는 과세제품의 실제생산 원가를 가리킨다. 공식적인 원가이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확정한다.**제8조** 조례 제4조에서 말하는 판매수량은 납세인의 과세제품 채굴 또는 생산하는 실제 판매수량과 판매로 간주되는 자가사용 수량을 포함한다.**제9조** 납세인이 과세제품 판매수량을 명확히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과세제품의 생산량 또는 주관세무기관이 확정한 환산비율로 환산한 수량을 자원세의 판매수량으로 하여 징수한다.**제10조** 납세인의 자원세 납부신고 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과세대상항목과 감면세 항목을 각각 계산하여 보고한다.**제11조** 조례 제9조에서 가리키는 자원세 납부의무 발생시간의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1) 납세인이 과세제품을 판매할 경우, 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다음과 같다.1. 납세인이 대금분할수취 결산방식을 사용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판매계약에서 약정한 수금일 당일로 한다.2. 납세인이 대금선수취 결산방식을 사용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과세제품 출고 당일로 한다.3. 납세인이 기타 결산방식을 사용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판매대금을 수취하거나 판매대금의 청구증빙을 취득한 당일로 한다.(2) 납세인이 과세제품을 자가생산 및 자가사용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과세제품을 이송하여 사용한 당일로 한다.(3)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대금 지급 당일로 한다.**제12조** 조례 제11조에서 지칭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독립광산, 연합기업 및 기타 미납세 광산제품을 구매하는 단위를 가리킨다.**제13조** 조례 제11조의 미납세 광산제품을 구매하는 단위를 자원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자원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로 적당한 세원이 적고 분산되어 있으며, 비정기적 채굴, 세금 누락 용이 등 세무기관이 통제관리하기 쉽지 않아, 원천징수의무자가 구매 시, 미납세 광산제품의 자원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적용한다. **제1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자원세를 원천징수 할 경우, 구매지역의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제15조** 여러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자원세 과세대상제품을 채굴 또는 생산하는 납세인의 그 하부 소속 생산단위와 결산단위가 동일한 성, 자치구, 직할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채굴 또는 생산한 과세제품은 일괄적으로 채굴 또는 생산지역에 납부한다. 종량과세(从量计征)를 실행하는 과세제품은 납부할 세액을 일괄적으로 독립결산하는 단위가 각 채굴지 또는 생산지 판매량 및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 및 획발(划拨)하며, 종가징수(从价计征)를 실행하는 과세제품은 납부할 세액을 일괄적으로 독립결산하는 단위가 각 채굴지역 또는 생산지역 판매량 및 단위판매가격, 적용세율에 따라 계산 및 획발(划拨)한다.**제16조** 본 세칙은 2011년 11월 1월부터 시행한다.첨부: 자원세 세목세율 명세표.xls<http://tfs.mof.gov.cn/zhengwuxinxi/caizhengbuling/201110/P020111031605733502681.xls>몇가지 주요품종의 광산자원등급표.doc<http://tfs.mof.gov.cn/zhengwuxinxi/caizhengbuling/201110/P020111031605733637582.doc> |  |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财政部令第66号　　《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实施细则》已经财政部部务会议和国家税务总局局务会议修订通过，现予公布，自2011年11月1日起施行。 　　　　　　　　　　　　　　　　　　　　　　　　　　　二○一一年十月二十八日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资源税暂行条例》（以下简称条例），制定本细则。 　**第二条**　条例所附《资源税税目税率表》中所列部分税目的征税范围限定如下： 　　（一）原油，是指开采的天然原油，不包括人造石油。 　　（二）天然气，是指专门开采或者与原油同时开采的天然气。 　　（三）煤炭，是指原煤，不包括洗煤、选煤及其他煤炭制品。 　　（四）其他非金属矿原矿，是指上列产品和井矿盐以外的非金属矿原矿。 　　（五）固体盐，是指海盐原盐、湖盐原盐和井矿盐。 　　液体盐，是指卤水。 　　**第三条**　条例第一条所称单位，是指企业、行政单位、事业单位、军事单位、社会团体及其他单位。 　　条例第一条所称个人，是指个体工商户和其他个人。 　　**第四条**　资源税应税产品的具体适用税率，按本细则所附的《资源税税目税率明细表》执行。 　　矿产品等级的划分，按本细则所附《几个主要品种的矿山资源等级表》执行。 对于划分资源等级的应税产品，其《几个主要品种的矿山资源等级表》中未列举名称的纳税人适用的税率，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纳税人的资源状况，参照《资源税税目税率明细表》和《几个主要品种的矿山资源等级表》中确定的邻近矿山或者资源状况、开采条件相近矿山的税率标准，在浮动30%的幅度内核定，并报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备案。 　 **第五条**　条例第四条所称销售额为纳税人销售应税产品向购买方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但不包括收取的增值税销项税额。 　　价外费用，包括价外向购买方收取的手续费、补贴、基金、集资费、返还利润、奖励费、违约金、滞纳金、延期付款利息、赔偿金、代收款项、代垫款项、包装费、包装物租金、储备费、优质费、运输装卸费以及其他各种性质的价外收费。但下列项目不包括在内: 　　（一）同时符合以下条件的代垫运输费用: 　　1.承运部门的运输费用发票开具给购买方的； 　　2.纳税人将该项发票转交给购买方的。 　　（二）同时符合以下条件代为收取的政府性基金或者行政事业性收费： 　　1.由国务院或者财政部批准设立的政府性基金，由国务院或者省级人民政府及其财政、价格主管部门批准设立的行政事业性收费； 　　2.收取时开具省级以上财政部门印制的财政票据； 　　3.所收款项全额上缴财政。 　　**第六条**　纳税人以人民币以外的货币结算销售额的，应当折合成人民币计算。其销售额的人民币折合率可以选择销售额发生的当天或者当月1日的人民币汇率中间价。纳税人应在事先确定采用何种折合率计算方法，确定后1年内不得变更。 　 **第七条**　纳税人申报的应税产品销售额明显偏低并且无正当理由的、有视同销售应税产品行为而无销售额的，除财政部、国家税务总局另有规定外，按下列顺序确定销售额： 　　（一）按纳税人最近时期同类产品的平均销售价格确定； 　　（二）按其他纳税人最近时期同类产品的平均销售价格确定； 　　（三）按组成计税价格确定。组成计税价格为： 　　组成计税价格＝成本×（1+成本利润率）÷（1－税率） 　　公式中的成本是指：应税产品的实际生产成本。公式中的成本利润率由省、自治区、直辖市税务机关确定。 　 **第八条**　条例第四条所称销售数量，包括纳税人开采或者生产应税产品的实际销售数量和视同销售的自用数量。 　　**第九条**　纳税人不能准确提供应税产品销售数量的，以应税产品的产量或者主管税务机关确定的折算比换算成的数量为计征资源税的销售数量。 　　**第十条**　纳税人在资源税纳税申报时，除财政部、国家税务总局另有规定外，应当将其应税和减免税项目分别计算和报送。 　　**第十一条** 条例第九条所称资源税纳税义务发生时间具体规定如下： 　　（一）纳税人销售应税产品，其纳税义务发生时间是： 　　1.纳税人采取分期收款结算方式的，其纳税义务发生时间，为销售合同规定的收款日期的当天； 　　2.纳税人采取预收货款结算方式的，其纳税义务发生时间，为发出应税产品的当天； 　 3.纳税人采取其他结算方式的，其纳税义务发生时间，为收讫销售款或者取得索取销售款凭据的当天。 　　（二）纳税人自产自用应税产品的纳税义务发生时间，为移送使用应税产品的当天。 　　（三）扣缴义务人代扣代缴税款的纳税义务发生时间，为支付货款的当天。 　　**第十二条** 条例第十一条所称的扣缴义务人，是指独立矿山、联合企业及其他收购未税矿产品的单位。 　　**第十三条**　条例第十一条把收购未税矿产品的单位规定为资源税的扣缴义务人，是为了加强资源税的征管。主要是适应税源小、零散、不定期开采、易漏税等税务机关认为不易控管、由扣缴义务人在收购时代扣代缴未税矿产品资源税为宜的情况。 　　**第十四条**　扣缴义务人代扣代缴的资源税，应当向收购地主管税务机关缴纳。 　　**第十五条**　跨省、自治区、直辖市开采或者生产资源税应税产品的纳税人，其下属生产单位与核算单位不在同一省、自治区、直辖市的，对其开采或者生产的应税产品，一律在开采地或者生产地纳税。实行从量计征的应税产品，其应纳税款一律由独立核算的单位按照每个开采地或者生产地的销售量及适用税率计算划拨；实行从价计征的应税产品，其应纳税款一律由独立核算的单位按照每个开采地或者生产地的销售量、单位销售价格及适用税率计算划拨。 　　**第十六条**　本细则自2011年11月1日起施行。附件下载:资源税税目税率明细表.xls<http://tfs.mof.gov.cn/zhengwuxinxi/caizhengbuling/201110/P020111031605733502681.xls> 几个主要品种的矿山资源等级表.doc <http://tfs.mof.gov.cn/zhengwuxinxi/caizhengbuling/201110/P020111031605733637582.doc> |